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10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원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2173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98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3,5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4.부터 2015. 12. 9.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5,960,000원, 피고 C은 5,980,000원, 피고 D은 1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을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있으므로 선택적 병합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우증권 주식회사,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4. 7. 초순경 통장을 주면 매주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10××××93344, 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7. 23. 현금카드를 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640××××0907807,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이라고 한다)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 D은 2014. 7.경 통장을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대우증권 주식회사 통장(계좌번호 ××××03187837, 이하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이라고 한다)과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0602150591, 이하 이 사건 우체국 통장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4.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원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라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위장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02000××××371, 이하 이 사건 원고 통장이라고 한다)에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으로 5,980,000원,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으로 5,960,000원,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으로 6,000,000원, 이 사건 우체국 통장으로 5,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고, 원고는 위 돈을 찾을 수 없었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은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각 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명불상자가 2014. 7. 24.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원고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원고 통장에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앞서 본 각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당일인 2014. 7. 24.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통장으로 송금된 금원 중 아래 표 중 '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피고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액	출금액	출금 수수료	피고 이득액 (입금액 - 출금액 - 출금수수료)
1	B	하나은행 640××××090780 7	5,960,000	5,950,000	7,000	3,000
2	C	신한은행 110××××9334 4	5,980,000	4,780,000	2,700	1,197,300
3	D	대우증권 ××××0318783 7	6,000,000	6,000,000	0	0
4		우체국 ××××06021505 91	5,500,000	5,490,000	4,800	5,2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들은 위 표 중 '피고 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 B은 부당이득금 3,000원, 피고 C은 부당이득금 1,197,300원, 피고 D은 부당이득금 5,2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B, C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불법행위에 사용된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명의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양수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피고 B, C은 신원이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받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점, ② 피고 B, C은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양

도한 점, ③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통장이 불법행위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 B, C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후 2014. 7. 24.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할 때까지 이 사건 하나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의 이용상황에 대한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⑤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와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교부할 경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통장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 B, C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양도하여 불법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에 해당하므로, 피고 B, C은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로서도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알려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B, C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송금액 5,960,000원 중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957,000원이고,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송금액 5,980,000원 중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1,197,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82,700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B은 손해액 중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른 2,978,500원($5,957,000원 \times 0.5$)을, 피고 C은 자신의 책임비율에 따른 2,391,350원 ($4,782,700원 \times 0.5$)을 각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피고 D 명의의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을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 사건 원고 통장에서 이 사건 대우증권 통장과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1,500,000원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송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송금액 11,5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2,981,500원(부당이득금 3,000원 + 손해배상금

2,9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0.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3,588,650원(부당이득금 1,197,300원 + 손해배상금 2,39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4.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부당이득금 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4.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